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653호
----------	--------

제출년월일 2025. 9.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시민들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를 진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선출 등(안 제5조)
- 다. 안전보안관의 직무(안 제6조)
- 라.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2026년 본예산 편성 예정(비용추계서 별첨)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7.21.~8.11.(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나) 경기도 : 안전기획과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김포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 재난·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4. 시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5.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사고·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안전기획관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안전기획관 류 규 형
	팀 장 직위·성명	재난상황팀장 권 충 안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 이 경 준(☎29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운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기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전보안관 활동 비용(피복비, 여비·식비 등)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 마련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안전기획관 기획관 류규형 팀장 권충안

00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000자치단체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